

[]습득물 []매장물 보관증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즉시
습득자	권리포기		보관만료일		
	성명		전화번호		
	주소		생년월일		
습득사항	습득일시		습득장소		
	품명(수량)		금액		
	물품 내역 (모양, 규격, 특징 등)				
「유실물법」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제출하신 습득물(매장물)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○○ 경찰서장 (인)					
귀하					
안내말씀					
1. 습득물(매장물)은 년 월 일까지 유실자 등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「유실물법」 제8조 및 「민법」 제253조 등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					
2. 이 보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일시, 장소, 경위를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					
3. 관련 문의사항은 ○○경찰서(담당자 ○○○, 연락처 □□□-□□□□-□□□□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